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이 상 원 의원)

의 안 번 호	24-142

발의년월일 : 2024. 11. .

발의자 : 이상원, 강동오, 고병준, 권인순, 김승수, 남해석, 신종갑, 오옥자, 이한동, 장정희, 차해영, 채우진, 최은하

1. 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,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조~제3조)

- 조례의 목적과 교섭단체의 정의,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 및 등록, 변경 등 절차를 규정함.

나. 교섭단체의 기능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(안 제4조 및 제5조)

- 교섭단체의 기능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.

3. 관계법령

「지방자치법」 제63조의2

4. **조 례 안** : 붙임

5. **예산조치**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4. 11. 6. ~ 11. 12.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교섭단체”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의회에 6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만,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6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 1명을 둘 수 있다.

③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이를 보고할 수 있다.

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능)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
2.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
3. 소속 정당과의 교류·협력 및 정당 정책의 추진
4.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예산 등의 지원)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교섭단체 등록신청서

☐ **교섭단체명:**

☐ **대표의원 인영부**

성 명		직 인	서 명
한 글			
한 문			

※ 직인명 예시: 00당대표의원의인(1변 길이 2.4㎝)

☐ **소속 의원 연서 명부**

연 번	소속 정당	의원 성명	서 명

년 월 일

대표의원 ○ ○ ○ (인)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교섭단체 명칭(대표의원)변경 보고

□ 변경사항

구 분	당 초	변 경

※ “구분”란에는 교섭단체의 “명칭변경” 또는 “대표의원 변경” 등을 기재

□ 대표의원 인영부

성 명		직 인	서 명
한 글			
한 문			

※ 직인명 예시: 00당대표의원의인(1변 길이 2.4㎝)

□ 소속 의원 연서 명부

연 번	소속 정당	의원 성명	서 명

※ 1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“서명”란은 불요

년 월 일

대표의원 ○ ○ ○ (인)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3호서식]

교섭단체 소속 의원 이동(정당변경)보고

□ 이동보고

대 상 의 원		이 동 사 항			비 고
소속 정당	성 명	일 자	내 용	사 유	

※ 이동사항 중 “내용”란에는 “교섭단체 탈퇴”, “신규가입” 등을 기재

□ 정당변경 보고

의원성명	정 당 변 경 사 항			비 고
	당초 정당명	변경 정당명	변 경 일 자	

년 월 일

대표의원 ○ ○ ○ (인)

의원 ○ ○ ○ (인)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4호서식]

당적 취득(소속정당 변경)보고

□ 당적 취득보고

의원성명	당적 취득사항		비 고
	취득한 정당명	취 득 일 자	

□ 소속정당 변경보고

의원성명	정 당 변 경 사 항			비 고
	당초 정당명	변경 정당명	변 경 일 자	

년 월 일

의원 ○ ○ ○ (인)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 귀하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제5조(예산 등의 지원)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의회사무국 의정팀 최은영
연 락 처	02-3153-6164

【관 계 법 령】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, 일부개정]

제63조의2(교섭단체)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

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
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